

제35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개정된

교역자은급법 안내



교회은급부담금 2% → 2.2%로 변경

※ 본부부담금 1% → 0.8%로 변경

(기존 본부부담금 중 20%를 은급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 삭제)



자원은퇴 기준 30년 → 20년으로 변경

※ 20년 이상 재직시 자원은퇴 가능(단, 은급 지급은 만65세 이후)

현 행

【1205】 제5조(기금의 조성의무) 이 법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제3조(적용범위) 제1항의 교역자와 개체교회는 아래의 금원을 은급재단이 지정하는 곳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는 전년도 경상비 총결산액의 2%를 교회은급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 개척교회의 경우 결산 1천만 원 미만인 교회는 3년 동안 교회은급부담금을 면제한다. 교회은급부담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정한다.

⑤ 감리회 본부는 모든 교회가 납부하는 본부 부담금 중에서 20%를 은급재단의 은급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.

【1203】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② ‘은퇴’라 함은 연회 회원 교역자로서 70세가 된 다음 해(연회 기준) 해당 연회에서 은퇴한 것을 말한다. 이 경우 65세 이상이 된 이의 자원은퇴, 30년 이상 재직한 이의 자원은퇴, 공상은퇴 등을 포함한다.

【1217】 제17조(재직기간의 계산방법) 교역자의 재직기간의 계산방법은 시행규정을 따른다.

④ 30년 이상 연회 회원으로 재직하고 연회에서 자원은퇴하는 교역자는 재직기간만큼 은급금 혜택을 받되 65세부터 지급한다.

개정된 은급법

【1205】 제5조(기금의 조성의무) 이 법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제3조(적용범위) 제1항의 교역자와 개체교회는 아래의 금원을 은급재단이 지정하는 곳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는 전년도 경상비 총결산액의 2.2%를 교회은급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 개척교회의 경우 결산 1천만 원 미만인 교회는 3년 동안 교회은급부담금을 면제한다. 교회은급부담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정한다. <개정>

⑤ 삭제

【1203】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② ‘은퇴’라 함은 연회 회원 교역자로서 70세가 된 다음 해(연회 기준) 해당 연회에서 은퇴한 것을 말한다. 이 경우 65세 이상이 된 이의 자원은퇴, 20년 이상 재직한 이의 자원은퇴, 공상은퇴 등을 포함한다. <개정>

【1217】 제17조(재직기간의 계산방법) 교역자의 재직기간의 계산방법은 시행규정을 따른다.

④ 20년 이상 연회 회원으로 재직하고 연회에서 자원은퇴하는 교역자는 재직기간만큼 은급금 혜택을 받되 65세부터 지급한다. <개정>

【298】 제98조 (감리사의 직무) 감리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.

⑩ 감리사는 지방에 속한 교회 교역자가 이임할 경우 직전 연도까지의 은급부담금, 기여금납입 여부를 사문하고 미납금이 있을 시 이임 결의를 보류한다. <신설>

※ 교리와 장정(2021) 제5조(기금의 조성의무) 2항 5호("현재까지 납입되지 못한 교역자은급기여금은 5년(2026년까지) 이내에 완납해야 한다.")에 의거 이임 결의의 보류는 2027년부터 가능합니다.

